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3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9.

발 의 자 : 최수진 · 광규택 · 박수민
김선교 · 김은혜 · 박충권
김기현 · 한지아 · 배준영
서지영 · 구자근 · 김태규
신성범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현행법 및 「도로법」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점포 앞 도로(인도 포함)에 상인들이 관행적으로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무단 도로점용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.

그러나 전통시장의 특성상 상점 앞 적정한 수준의 상품 진열(이른바 ‘고객선’ 또는 ‘황색선’ 내 영업)은 상행위 활성화와 이용객의 구매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.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이를 허용·묵인하고 있으나, 이는 상위법인 「도로법」과 충돌하여 민원이 제기될 경우 상인들이 범법자로 몰리거나 적치물이 철거되는 등 법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.

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보행자의 안

전과 소방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포 앞 상품 진열 및 좌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, 구체적인 허가 요건 및 관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.

이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 한편, 보행자 통행권 및 소방 안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전통시장 내 점포 앞 상품 진열 등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특례 신설(안 제17조의3제1항 신설)

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이 시장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도로법」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점포 앞 일정 범위에 한하여 상품 진열대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.

나. 보행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허가 요건 법정화(안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신설)

특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시 최소 보행 폭 확보,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, 도로의 안전 및 미관 유지 등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명시함.

다.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의 구체적 위임(안 제17조의3제2항 신설)

점용의 구체적인 범위, 진열대 규격, 점용료 부과 및 감면 기준 등

실무적인 운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
하여 지역별 도로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3(점포 앞 상품 진열 등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특례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장등의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도로법」 제61조 및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상품 진열대 및 좌판의 설치를 위한 시장등의 점포 앞 도로 일부의 점용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보행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보행 폭 이상의 보행 공간이 상시 확보될 것
2. 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
3. 도로의 구조 안전 및 미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의 구체적인 범위, 상품 진열 규격, 점용료 부과 기준 및 감면율,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도로점용허가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7조의3(점포 앞 상품 진열 등</u> <u>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특례)</u> <u>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</u> <u>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 <u>시장등의 활성화와 이용객의</u> <u>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</u> <u>우 「도로법」 제61조 및 제62</u> <u>조에도 불구하고 상품 진열대</u> <u>및 좌판의 설치를 위한 시장등</u> <u>의 점포 앞 도로 일부의 점용</u> <u>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</u> <u>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</u> <u>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 <u>1. 보행자의 원활하고 안전한</u> <u>통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하는 최소 보행 폭 이상의</u> <u>보행 공간이 상시 확보될 것</u> <u>2. 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 시</u> <u>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의 통</u> <u>행에 지장이 없을 것</u> <u>3. 도로의 구조 안전 및 미관을</u> <u>해치지 아니할 것</u> <u>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</u>

	<u>에 점용의 구체적인 범위, 상품 진열 규격, 점용료 부과 기준 및 감면율, 허가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.</u>
--	--